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. 3. 28.(금)

국민건강보험공단, 경남 산청군 등 특별재난지역 8곳에 추가 급여 지원

- 대형 산불로 분실·훼손된 노인틀니,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지원 -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기석)은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자체*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하여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.
 - * 경남 산청군·하동군, 경북 의성군·안동시·청송군·영양군·영덕군, 울산광역시 울주군
 - 이에 공단은 대형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, 장애인보조기기(보청기 등)를 분실,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하게 된다.
 -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,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~6년이 경과 되어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,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 -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,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고,
 -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.
-
-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“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고 덧붙였다.

<붙임> 특별재난지역 노인들니,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책 내용

담당 부서	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	책임자	부 장	신정선 (033-736-4602)
		담당자	팀 장	백민아 (033-736-4651)
	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	책임자	부 장	고수정 (033-736-4603)
		담당자	팀 장	유은경 (033-736-4661)
배포 부서	홍보실 미디어소통부	책임자	부 장	차철호 (033-736-1404)
		담당자	팀 장	유병준 (033-736-1420)

□ **노인틀니**

- (지원내용) 피해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인틀니 추가 재제작 지원
 - 기존 건강보험으로 급여적용 시술 받은 동종틀니*(임시틀니 포함)
 - * 부분틀니 → 부분틀니, 완전틀니 → 완전틀니
- (지원금액)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% ... 941,350원~1,145,130원 범위
- (제출서류)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, 피해사실확인서
- (접수방법) 공단 지사 팩스 또는 우편, 방문 접수

《 노인틀니 종류별 급여 지원 금액 _ 치과의원 기준 》

'25.1.1. 기준 (단위: 원)

구 분	레진상 완전틀니	금속상 완전틀니	부분틀니
합 계	1,344,350	1,558,840	1,635,530
공단부담금(70%)	941,350	1,091,440	1,145,130
본인부담금(30%)	403,000	467,400	490,400

□ **장애인보조기기**

- (지원내용) 피해지역 장애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조기기 추가 급여
 - 기 지급 보조기기와 동일한 품목 재 지급
 - *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, 고시금액, 실 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% 지원 (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%)
- (제출서류) 재지급 신청서와 지자체 발급 '피해사실확인서' 제출
 - 처방전, 공단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에 지급된 자료로 대체
- (접수방법) 공단 지사 팩스 또는 우편, 방문 접수

□ **공통사항**

-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틀니·보조기기 지급 이력자 대상 문자(LMS) 안내 및 관할 지자체(보조기기 판매업소)에 협조 안내문 발송